



제433회국회(임시회)
제3차 교육위원회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< “기후변화환경교육” 을 “기후환경교육” 으로 변경>

■ 정을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6853호)

2026. 4.

교 육 위 원 회

전문위원 윤 상 열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“기후변화환경교육”을 “기후환경교육”으로 변경	2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정을호의원 등 11인

2. 발 의 일 : 2026. 2. 13.

3. 회 부 일 : 2026. 2. 1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,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, 기후변화교육·탄소중립교육·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,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‘기후변화환경교육’을 ‘기후환경교육’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).

Ⅲ. 검토의견

1. “기후변화환경교육”을 “기후환경교육”으로 변경(안 제22조의2)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현행 기후변화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여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22조의2(<u>기후변화환경교육</u>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<u>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</u>	제22조의2(<u>기후환경교육</u>) ----- ----- ----- <u>대응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</u> ----- -----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 제22조의2는 “기후변화환경교육”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“생태전

환교육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“기후변화환경교육”은 교육 영역(환경교육 분야)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임¹⁾.

□ 이에 반해 “생태전환교육”은 교육의 목적, 방향과 가치 지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기후위기 비상시대,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²⁾,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³⁾,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,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⁴⁾ 등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⁵⁾.

1) 「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103514)」 제안이유 참조

2) 2024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, 서울특별시교육청

3)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태전환교육”이란 인천광역시 학교의 학생에게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.

4) 지속가능한 삶을 대비하는 생태전환교육, 충남교육, 제199호, 2022년, 27p

5) 공통적으로 인간과 환경(자연)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(총체적인)의 전환을 위한 교육으로 해석됨.

- 개정안은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, 기후변화교육·탄소중립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, 기후변화환경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“기후변화환경교육”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, “기후환경교육”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두면서도 환경 전반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바⁶⁾,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.
- 교육부는 ‘생태전환교육’은 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환경교육, 기후교육 등 기존 교육 개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, 향후 관련 법령 및 정책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을 포괄하는 정책 영역을 ‘기후환경교육’으로 명확히 하고, 생태전환교육은 기후환경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방향 또는 가치 개념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용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.

문 의 처

02)6788-5186

6) 교육부 설명자료 참조